

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9. 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8월 30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9월 3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7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9. 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광우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,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
-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을 지원하고, 외국인 수 등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함
-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, 고충 · 생활 · 법률 · 취업 등 상담,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, 문화 · 체육행사 개최 등
- 거주외국인 지원 및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"를 구성 · 운영
-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

-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주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, 명예 구민으로 예우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